

대출거래약정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년 월 일

※ 은행은 본인에게 이 대출거래약정서(이하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이하 “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인	성명	(인)
	주소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가 수행하는 채권유동화업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동 채권유동화를 위하여 본건 대출 및 담보권이 공사로 양도(신탁 포함)되는 경우에도 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에 따라 본건 대출을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 합니다.)

대출과목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금 원정				
대출기간	년				
대출개시일	<input type="checkbox"/> 20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				
대출만료일	20 년 월 일 ※ 대출기간을 기재하고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한 경우 대출만료일 기재 생략 가능				
이자율 (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선택)	고시금리	• 대출만료일까지 연 %			
	우대금리	총 ()%p			
	아낌e	<input type="checkbox"/> 전자약정 및 전자설정 0.1%p			
	추가우대 (최대 1.0%p 내 적용가능)	사회적 배려층 (최대 2회 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구 0.7%p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구 0.7%p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구 0.7%p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구 0.7%p		
		그 외	<input type="checkbox"/> 청년 0.1%p <input type="checkbox"/> 신혼가구 0.2%p <input type="checkbox"/> 신생아출산가구 0.2%p <input type="checkbox"/> 녹색건축물 0.1%p <input type="checkbox"/> 미분양주택입주자 0.2%p <input type="checkbox"/> 전세사기피해자 등 1.0%p ※ 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최종적용금리	• 대출만료일까지 연 %			
	• 본 약정서 제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부과하며, 연체(만기경과 또는 연체 이외의 기한의 이익상실 포함)시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을 적용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 + 연 2%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 + 연 3% - 단,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를 적용				
	지연배상금 (연체이자)률 (기본약관제3조 제4항 및 제5항 선택)				
	1년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보고 초일산입 말일불산입하여 후취로 계산합니다.				

대출실행방법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1. 대출만료일에 금 원 을 상환합니다. 2. 위 1항 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매 1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리금균등 <input type="checkbox"/> 원금균등 <input type="checkbox"/> 체증식) 분할상환합니다.		
원금 및 이자납입 방법*	<input type="checkbox"/> 원금과 이자를 매월 말일에 납입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원금과 이자를 매월 ()일에 납입합니다. ※ 차무자는 이 약정 체결 이후 납입일을 연1회에 한하여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납입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합니다. ※ 다만, 대출일과 납입일이 다르면 최초이자는 대출일 기준 1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첫 약정납입일에 납부합니다. 예시) 대출일이 2011.10.10이고,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최초이자납입일은 2011.12.5일입니다. · 원리금 납입일을 변경할 경우 첫 납입일은 변경전 최종 이자계산일(전회차 납입일)로부터 1개월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경된 납입일로 합니다.		
조기(중도)상환 수 수료	1. 조기(중도)상환원리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0.7% × [(3년-대출경과일수)/3년]으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2.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회적배려층 <input type="checkbox"/> 전세사기피해자 등 *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기준		
원리금의 계산	매월 납입해야 할 원리금(원금 및 이자)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원금상환방법 또는 이자납입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자납입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창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관계 :)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입금계좌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관계 :)		

※ 은행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장치를 통한 계좌입금 분은 당일 종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제1조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함 본인 (인)

제2조 지연배상금(연체이자)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납입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본약관 제7조 또는 이 약정 제6조·제7조, 제8조·제9조 및 제3항, 제12조, 제16조 및 고객고지사항 제1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2024.10.17일 이후에 실행(채무인수 포함)된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채권이 연체가 발생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본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채무이행 기한이 미도래했을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지 않고, 약정이자율만 적용)

제3조 자동이체제도 이용 등

자동이체제도 등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납입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상환시에는 은행에 직접 납입하기로 합니다.
-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각종 예금 약관 또는 약정서



- 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은행의 자동이체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3. 납부일 현재 지정계좌의 잔액이 청구금액에 미달하여 출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직접 납입하기로 합니다.
 4. 이 자동이체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해당일 30일전까지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4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5조 담보제공

- ① 본인은 본건 담보주택에 은행의 승인 없이 그 소유권 이전행위와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동기,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제3자로부터 은행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동 주택은 토지와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②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공사를 위하여 질권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6조 대출금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대출을 받은 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인정하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담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전부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7조 거래조건의 변경

'대출상담 및 신청서' 및 제출자료가 하위, 위·변조, 불성실 작성 또는 부실자료로 확인되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이 공사에 양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거나 은행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기간·대출금액·대출금리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를 합니다.

- 채권유동화에 관한 특약사항 -

제8조 주택보유수

①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보유한 주택(지분으로 보유한 주택, 주택면적이 1/2이상인 복합용도 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보금자리를 담보주택인 오피스텔 포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본건 담보주택 외에 기존 1주택(이하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출실행 후 견증기준일(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을 기준으로 추가 주택을 보유(이하 '추가주택')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추가주택은 견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이하 '처분기한')할 것을 약정합니다.

* 추가주택을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였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같은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이하 '전세사기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공매로 낙찰받은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견증기준일로부터 3년

②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처분사실을 처분기한 내 은행 또는 공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또는 공사는 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미 처분 시 기한의 상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 또는 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미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하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에 통지 도달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8조(단, 제18조 제2항 단서 중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의 기한전 채무변제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를 준용합니다.

③ 향후 정부 주택전산망 기타 증명에 의하여 주택 소유에 대한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건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이를 변제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주택보유현황 (본건 담보주택 제외) ※ 배우자 소유 합산	<input type="checkbox"/> 무주택 <input type="checkbox"/> 1주택(처분 예정) (처분기한 : <input type="checkbox"/> 3년) * 처분기한 내 처분대상 주택 미처분 시 이 약정서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처분대상 주택미처분이 확인되는 날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를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처분대상 기존주택 소재지	

위 특약사항 제8조의 주택보유 수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약정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 및 보금자리를 추가이용 제한 등에 동의합니다.

본인 _____ (인)

제9조 채권의 양도·신탁 및 피담보채권

본인은 공사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본건 대출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동의합니다.

1. 본인은 은행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공사에 양도하고 공사가 이를 신탁함을 승낙하며, 본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도 공사는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이 실제로 공사로 양도되는 시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공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원금(약정금액기준) 3천만원 미만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양도 예정에 따른 통지사항을 적용합니다.

- ※ 대출채권 양도 예정에 따른 통지사항
 1. 양도대상 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
 2. 양도예정일 : 대출거래 실행일(건물미등기 후취담보대출은 담보취득일) 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다만, 공사와 금융기관이 협의한 경우 등에는 양도예정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양수 예정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4. 채무조정 : 채무자는 원금상환유예, 지연배상금 감면, 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며, 양도예정 통지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양도됨(상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홈페이지를 참고)
 5.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부

2. 본인은 위 1호의 양도 및 신탁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시점에 확정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본건 근저당권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3. 공사는 사전심사하지 않은 경우(t-보금자리를 등과 같이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공사에 양도한 후에도 다음과 같이 채권관리업무(채권의 보전, 회수 및 추심 등 관리업무)를 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채권관리업무 위탁
 1. 위탁대상 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
 2. 위탁예정일 :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공사에 양도하는 시점
 3. 수탁예정인 :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실행 금융기관
 4. 채무조정 : 채무자는 원금상환유예, 지연배상금 감면 등의 채무조정 요청 가능하며, 채무조정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위탁됨(상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
 5.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부
 6. 기타 사항 : 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심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등 채무자의 권리 행사 및 구제 가능

위 특약사항 제9조에 동의함

본인

(인)

- 토지 후취담보에 관한 특약 -

제10조 토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본건 대출이 토지 미등기된 아파트를 담보로 한 경우에는 토지 미등기 사유가 없어져 본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시 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곧 이행하기로 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0조에 동의함

본인

(인)

- 행정전산망 이용 등의 -

제11조 무주택검증·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본인 및 배우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결혼예정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 확인, 본인의 전입사실 확인 및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1조에 동의함

본인

(인)



- 결혼예정자에 대한 특약 -

제12조 결혼사실증명

본인은 결혼예정자 자격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기에 본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 또는 공사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결혼예정자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건 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되는 것과, 우대금리 적용으로 인한 상환일까지의 이자차액을 전액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2조에 동의함	본인	(인)
------------------	----	-----

- LTV · DTI 우대 적용 특약 -

제13조 LTV · DTI 우대 적용

담보주택 소지자가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조정지역(과열지역) 등' 인 경우로서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경우 LTV와 DTI 강화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 DTI 강화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수요자 요건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또는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관한 내용이 진술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건 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 실수요자 요건이란 구입용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3조에 동의함	본인	(인)
------------------	----	-----

-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에 관한 특약 -

제14조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대출을 말합니다.
-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점수 미달인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 1호에도 불구하고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이 취급된 경우에 공사는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잔여채무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특약사항 제14조에 동의함	본인	(인)
------------------	----	-----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관한 특약사항 -

제15조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연금 개별대출 등으로 보금자리론 전액 상환이 가능한 경우 주택연금으로 전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시점의 연금가입 요건에 따라 전환여부가 결정되며, 연금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연금 전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대출 전액상환일까지 0.2%p입니다. 우대금리는 만 55세 이후에 주택연금 전환 후 전환장려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 전환 후 지급되는 우대금리 누적액(전환장려금)은 납부한 보금자리론 이자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년 말 연복리*로 적립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이용 합계액 2억원 이하 대출실행금액에 대해서만 전환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연복리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하는 이자율(예시:한국은행 고시 정기예금 연평균금리 등), 대출 완제일 해당연도 우대금리는 직전년도 연복리 금리를 적용
- 대출실행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대금리 한도율*을 적용
* ① 우대금리 한도율(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상) = 2억원 ÷ 대출실행금액
- 보금자리론이 2건 이상 있는 경우에는 대출실행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2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2억원을 최초로 초과하는 당해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만 우대금리 한도율*을 적용
* ② 우대금리 한도율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상) = (2억원-기 이용중인 보금자리론 대출실행금액합계액) ÷ 2억원을 최초로 초과하는 당해 보금자리론의 대출실행금액
- 우대금리 누적액은 주택연금 보증약정 철회기한(최초 연금지급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주택연금 가입고객 명의 계좌로 기타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대출 전액상환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우대금리 누적액이 지급됩니다.
- 우대금리 누적액은 대출 전액상환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3개월 이내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소멸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대출이 공사로 양수된 경우에

만 우대금리 누적액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 채무인수 시의 기존 우대금리 누적액은 배우자가 대출만기에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유지되며, 제3자 채무인수 시에는 기존 우대금리 누적액이 소멸되며, 채무인수일로부터 신규 적립됩니다.
- 배우자는 대출만기에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도 우대금리 누적액을 포기하고 채무인수 가능하나, 제3자 채무인수는 채무인수자 또는 채무인수자의 배우자가 대출만기에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를 우선 납부한 후, 일정 요건(만 55세 이상이고 대출 전액상환일이 주택연금 신청일부터 주택연금 전환일(실행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연금 약정철회기간 경과 시 납부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5조에 동의함	본인	(인)
------------------	----	-----

- 전세사기피해자동에 관한 특약사항 -

제16조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목적 오피스텔 담보주택 전입

- 채무자가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주거용임을 확인(전입세대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한 전입한 기록,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3에 따른 임차권 등기,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중 1가지 방법) 할 수 없는 경우와 담보주택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 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 전입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위 특약사항 제16조에 동의함	본인	(인)
------------------	----	-----

제17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을 받은 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면 즉시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7조에 동의함	본인	(인)
------------------	----	-----

- 기타 특약사항 -

본인 (인) 자필확인

- 고객 고지 사항 -

- 본인이 신청일 현재 '대출거래약정서' 또는 '대출상담 및 신청서'에 진술한 주택보유수, 임대차 현황 또는 상환예정 기준대출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건 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
- 원리금의 납입일변경(연1회에 한함)을 제외하고는 처분조건 기한변경, 담보주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의사 표시는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가능하나, 공사가 사전심사한 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서명 대출약정 시 추가 고지사항 본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출취급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전자서명을 통해 본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인)	자필확인
----	-----	------

